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점 및 지점(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1년 02월 0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2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1년 02월 22일(월) ~ 2021년 03월 09일(화)

※ **숙려적용 대상투자자의 경우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5일(금)까지 매입청구 가능(숙려기간 : 매입청구 불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투자자 숙려기간 : 2021년 03월 08일 ~ 03월 09일**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투자설명서, 대고객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SMS등을 통해 안내된 숙려기간 내에 가입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적용대상자는 아래의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적용대상자>

1. **투자성향 부적합 거래고객 또는 고령투자자***
2. **공모형 ELF/DLF를 판매회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경우(비대면 신규 제외)**

***고령투자자 : 고령투자자는 만70세 미만으로 확대적용 가능하며, 판매회사별 정의에 따름**

■ **투자자 숙려제도란?**

1. **ELF 가입 후 펀드 설정 전에 대상투자자가 ELF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
2. **대상 투자자 :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고령투자자(만 70세 이상)**

   ※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

3. **적용방식 : 대상 투자자는 가입 마감 2영업일전까지 가입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가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취소**
4. **안내 : 가입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유선 등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추가적으로 안내**
5. **취소방법 :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 신청 가능(전화 취소 불가능)**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1년 02월 02일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DG206]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시장위험,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및 중도환매 시 저평가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

·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는 해외통화로 산출되는 각 글로벌 주가지수를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주가지수로 기존의 지수와 다른 별개의 정식 주가지수로 각각의 글로벌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동일한 지수산출기관에서 정해진 지수산출공식에 따라 투명하게 산출하여 고시하는 룰베이스(Rule-based)지수 입니다.

· FX Hedged Index는 원화로 산출되므로, 이를 원화로 투자되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활용 시 기존의 해외 주가지수를 활용한 ELS에 내재된 콴토 헤지 비용(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원화 투자수익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콴토 리스크를 헤지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ELS의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글로벌 주가지수 성과에 더해 원화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지수들 간에는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 대비 성과차이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 정보]

구분	S&P500 NDF KRW Hedged Index
블룸버그 티커	SPXNKH Index
지수산출기관	S&P Dow Jones Indices
지수조회 웹사이트	https://us.spindices.com/indices/equity/sp-500-ndf-krw-hedged-index

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 및 수익률

자동조기상환 시 수익구조	리자드상환 시 수익구조	만기상환 시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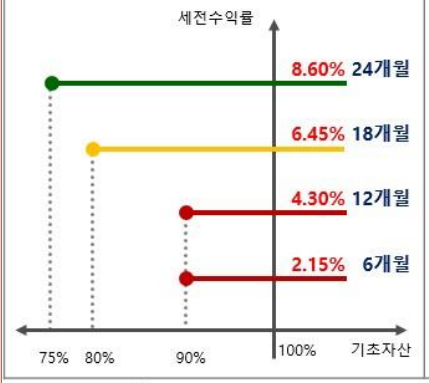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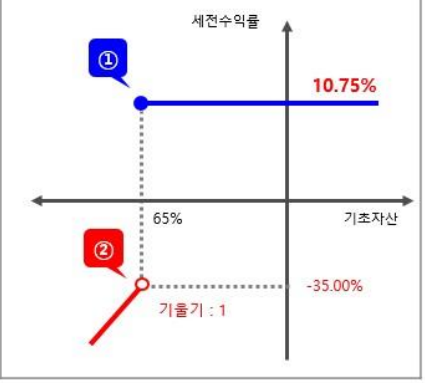

자동조기 상환 시	➢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 대비 아래 조건을 충족 시 2.15% X n (n=1,2,3,4)수준 지급 후 청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리자드 상환 시	➢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90%미만인 경우로서, 최초설정일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각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75% 미만 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연6.45% 수익 지급			
만기 상환 시	① 수익상환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② 손실상환	※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65%미만 하락여부는 최종기준가격결정일의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만 모니터링 ※ 최대 원금손실률: 100%		

※ 상기 수익률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로 투자신탁보수 차감 후, 세금 공제 전 기준입니다. 또한, 당해 투자신탁재산 내 잔여재산의 운용 및 운용 비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률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Class A-e 수익증권(온라인투자자용)과 Class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상환수익률(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투자원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 상환평가일 및 상환금 지급일

구분	내용	
기초자산	지수	블룸버그 티커
	S&P500 NDF KRW Hedged Index	SPXNKH Index
	NIKKEI225	NKY
	KOSPI200	KOSPI2
설정일	2021년 03월 10일(수)	
최초기초자산가격 결정일	2021년 03월 10일(수)	
모집기간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9일(화) [숙려적용 대상 투자자의 경우]	
	매입청구 가능	매입청구 불가
	2021년 02월 22일 ~ 03월 05일	· 숙려기간 · 2021년 03월 08일 ~ 03월 09일

회차	평가일	상환금지급일	비고
1 차	2021년 09월 07일 (화)	2021년 09월 10일 (금)	
2 차	2022년 03월 07일 (월)	2022년 03월 10일 (목)	
3 차	2022년 09월 06일 (화)	2022년 09월 13일 (화)	
4 차	2023년 03월 07일 (화)	2023년 03월 10일 (금)	
만기	2023년 09월 05일 (화)	2023년 09월 08일 (금)	

다.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발행사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기준일
NH투자증권	AA+	한국신용평가	2021.02.01
미래에셋대우	AA	한국신용평가	2021.01.25
신한금융투자	AA	한국신용평가	2021.01.08
하나금융투자	AA	한국신용평가	2021.01.28

(주1)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변동이 가능하며,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 발생시 투자원금 및 수익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AAA/AA(+, 0, -) / A(+, 0, -) / BBB(+, 0, -)로 구분됩니다.
(주3) 평가기관에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이 없을 시 해당 발행회사의 최근 선순위회사채 등급 및 평가일자로 기재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ELS-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추가납입불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6개월	1년	2년	2.5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납입금액의 0.70% 이내	0.2500	-	0.5600	93	94	94	94
	6개월 경과후		0.0030	-					
수수료선취-온라인형 (Ae)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납입금액의 0.50% 이내	0.2500	-	0.4900	63	64	64	64
	6개월 경과후		0.0030	-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예시는 펀드가 만기상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수 및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유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영국	1970	본부장	63개	1,276억	-	-	64.45%	-	0.9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솔루션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table>
<tr><td></td><td>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td></tr>
<tr><td>투자자
숙려제도</td><td>■ 투자자 숙려기간 : 2021년 03월 08일 ~ 03월 09일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투자설명서, 대고객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SMS등을 통해 안내된 숙려기간 내에 가입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적용대상자는 아래의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적용대상자>
1. 투자성향 부적합 거래고객 또는 고령투자자*
2. 공모형 ELF/DLF를 판매회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경우(비대면 신규 제외)
*고령투자자 : 고령투자자는 만70세 미만으로 확대적용 가능하며, 판매회사별 정의에 따름

■ 투자자 숙려제도란?
1. ELF 가입 후 펀드 설정 전에 대상투자자가 ELF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
2. 대상 투자자 :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고령투자자(만 70세 이상)
·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
3. 적용방식 : 대상 투자자는 가입 마감 2영업일전까지 가입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가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취소
4. 안내 : 가입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유선 등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추가적으로 안내
5. 취소방법 :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 신청 가능(전화 취소 불가능)</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손익이 결정되며, 기초자산 관련 주식시장 붕괴 등으로 인한 주가 폭락시 원금손실이 발생(최대 -100%)합니다.</td></tr>
<tr><td>유동성 위험 및
중도환매 위험</td><td>파생결합증권(ELS)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작습니다. 이에 파생결합증권을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 시 환매청구일과 기준가격 적용일이 달라서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높은 환매수수료 징구(잔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환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 신용위험</td><td>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재무상황의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며 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투자원금의 일부/전액 손실이 발생 또는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위험</td><td>기초자산 본질 가치의 변경(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증자·감자·주식 소각 등)등의 합리적 사유로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치의 확정이 필요한 날[최초/중간/최종기준가격 결정일 등]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초자산에 대한 최초/중간/최종기준가격 결정일과 지급일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 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합니다.</td></tr>
<tr><td>FX Hedged</td><td>FX Hedged Index는 콴토헤지 비용(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원화</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Index
성과차이 위험</td><td>투자수익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콴토 리스크를 헤지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지수에 반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기존지수 대비 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지수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 대비 성과차이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와 환율의 변동성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와의 성과 괴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차이로 인하여, 기존지수와 투자 대비 조기상환이 지연되거나 만기시점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누적수익률과의
괴리위험</td><td>FX Hedged Index는 일별로 산출되는 지수로 특정기간 동안의 주가지수와 환율의 누적수익률로 계산되는 값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td></tr>
<tr><td>매입방법</td><td colspan="2">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td></tr>
<tr><td>환매방법</td><td colspan="2">·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 6개월 미만 환매 시 : 환매금액의 7%
·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전 환매 시 : 환매금액의 5%</td></tr>
<tr><td rowspan="2">기준가격</td><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r><td rowspan="3">과세</td><td>구분</td><td>과세의 주요내용</td></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2">BNK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td></tr>
<tr><td rowspan="2">모집기간</td><td rowspan="2">·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9일(화)
· 숙려적용 대상투자자의 경우
: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5일(금)</td><td>모집·매출 총액</td><td>1조좌</td></tr>
<tr><td rowspan="2">효력발생일</td><td rowspan="2">2021년 02월 21일</td><td rowspan="2">존속기간</td><td rowspan="2">최초설정일로부터 2년 7개월간.
다만,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지급일 익영업일까지</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
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됩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		DG206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G207
A-e	수수료선취-온라인	DG2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ELS-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좌(=1원) 단위로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일 이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9일(화)

[숙려적용 대상 투자자의 경우]

매입청구 가능	매입청구 불가
2021년 02월 22일 ~ 03월 05일	· 숙려기간 · 2021년 03월 08일 ~ 03월 09일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금액 미달에 관한 사항 : **모집결과 투자신탁 운용에 필요한 최소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BNK리자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KRW)NK-6호[ELS-파생형]		DG206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G207
A-e	수수료선취-온라인	DG2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21.03.10	최초 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2년 7개월간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단, 파생결합증권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충족되어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의 익영업일까지를 신탁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유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윤영국	1970	본부장	63개	1,276억	-	-	64.45%	-	0.9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1995.12~1999.10 유화증권 파생상품운용 - 1999.10~2005.06 CJ투자증권 상품개발 - 2005.06~2006.09 서울자산운용 상품개발 - 2006.09~2009.05 피닉스자산운용 상품개발 - 2009.05~2017.01 유진자산운용 상품개발/마케팅 - 2017.03~2018.04 국제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 2018.04~현 재 BNK자산운용 솔루션운용본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ELS-파생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파생결합 증권	60% 이상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기초자산인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 (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나. 다음과 같은 상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1) 설정일 이후 도래하는 각 회차별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의 종가(이하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순차적으로 [90%-90%-80%-75% 이상]인 경우 [연 4.30%(세전)]수준 수익률로 자동조기상환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90% 미만]인 경우로서,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각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6.45%(세전)] 수준 수익률로 **2차 자동조기상환일**에 자동조기상환

			(3)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연 4.30%(세전)]** 수준 수익률로 만기 수익상환 (4)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그 종가가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기초자산 중 기초자산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기초자산가격 기준 수익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34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위의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

-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는 해외통화로 산출되는 각 글로벌 주가지수를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주가지수로 기존의 지수와 다른 별개의 정식 주가지수로 각각의 글로벌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동일한 지수산출기관에서 정해진 지수산출공식에 따라 투명하게 산출하여 고시하는 룰베이스(Rule-based)지수입니다.
- FX Hedged Index는 원화로 산출되므로, 이를 원화로 투자되는 ELS의 기초자산으로 활용 시 기존의 해외주가지수를 활용한 ELS에 내재된 콴토 헤지 비용(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원화 투자수익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콴토 리스크를 헤지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ELS의 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글로벌 주가지수 성과에 더해 원화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지수들 간에는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 대비 성과차이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FX Hedged Index(환헤지 인덱스)] 정보]

구분	S&P500 NDF KRW Hedged Index
블룸버그 티커	SPXNKH Index
지수산출기관	S&P Dow Jones Indices
지수조회 웹사이트	https://us.spindices.com/indices/equity/sp-500-ndf-krw-hedged-index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위험관리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거래상대방)를 4군데 이상으로 나누어 투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분산시키며, 각 거래상대방별 파생결합증권 거래금액은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투자 제한됩니다.

(3)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조정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만기상환평가일 등 기초자산 주가(또는 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각 기초자산에 대한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가격, 만기상환평가일 주가(또는 지수), 만기상환일 또는 기타 지급일 등 투자신탁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상관행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이에 우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

②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상환평가일에 가격제공자(거래소 등)가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가를 공표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거래정지, 기세상한가 및 기세하한가 등)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③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④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회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긔 거래중지사타개발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⑤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해 본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⑥ 관련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나.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 및 수익률

자동조기상환 시 수익구조	리자드상환 시 수익구조	만기상환 시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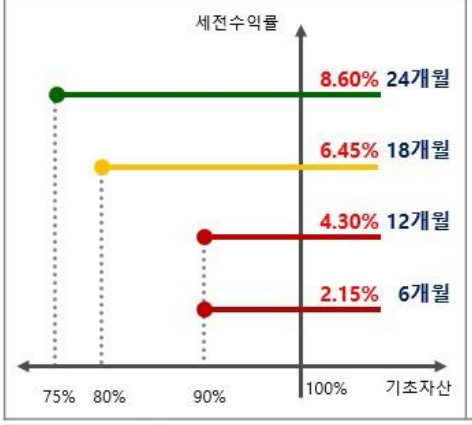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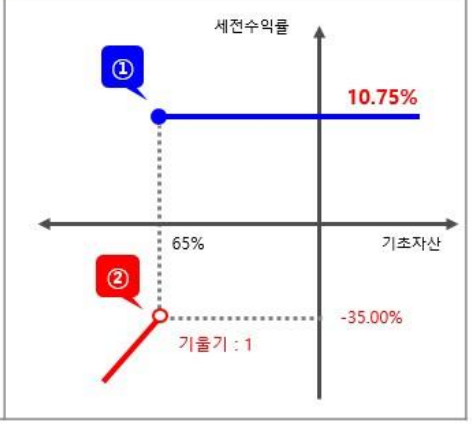

자동조기 상환 시

➢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 대비 아래 조건을 충족 시 2.15% X n (n=1,2,3,4)수준 지급 후 청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리자드 상환 시

➢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90%미만인 경우로서, 최초설정일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각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75% 미만 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연6.45% 수익 지급

만기 상환 시

① 수익상환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② 손실상환	※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65%미만 하락여부는 최종기준가격결정일의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만 모니터링 ※ 최대 원금손실률: 100%

※ 상기 수익률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로 투자신탁보수 차감 후, 세금 공제 전 기준입니다. 또한, 당해 투자신탁재산 내 잔여재산의 운용 및 운용 비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률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Class A-e 수익증권(온라인투자자용)과 Class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상환수익률(선취판매수수료 차감 전 투자원금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 상환평가일 및 상환금 지급일

구분	내용	
기초자산	지수	블룸버그 티커
	S&P500 NDF KRW Hedged Index	SPXNKH Index
	NIKKEI225	NKY
	KOSPI200	KOSPI2
설정일	2021년 03월 10일(수)	
최초기초자산가격 결정일	2021년 03월 10일(수)	
모집기간	2021년 02월 22일(월) ~ 03월 09일(화) [숙려적용 대상 투자자의 경우]	
	매입청구 가능	매입청구 불가
	2021년 02월 22일 ~ 03월 05일	· 숙려기간 · 2021년 03월 08일 ~ 03월 09일

회차	평가일	상환금지급일	비고
1 차	2021년 09월 07일 (화)	2021년 09월 10일 (금)	
2 차	2022년 03월 07일 (월)	2022년 03월 10일 (목)	
3 차	2022년 09월 06일 (화)	2022년 09월 13일 (화)	
4 차	2023년 03월 07일 (화)	2023년 03월 10일 (금)	
만기	2023년 09월 05일 (화)	2023년 09월 08일 (금)	만기상환일

(주1) 상기 모든 일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평가일자는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소 영업일 기준이며, 거래소 영업일은 거래소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날을 말합니다. 거래소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평가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 시장 개장을 제외한 임시 공휴일 또는 기초자산의 일시적 매매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기초자산가격을 확정할 수 없거나 예정된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지급일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기초자산이 두개 이상인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에 순연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 관찰도 함께 순연됩니다. 편입된 파생결합증권 대금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환금 지급일은 순연하여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 환매 시에도 거래소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영업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일에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구성 종목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평가일 및 지급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대금지급일 순연 시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라.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발행사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기준일
NH투자증권	AA+	한국신용평가	2021.02.01
미래에셋대우	AA	한국신용평가	2021.01.25
신한금융투자	AA	한국신용평가	2021.01.08
하나금융투자	AA	한국신용평가	2021.01.28

(주1)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변동이 가능하며,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 발생시 투자원금 및 수익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평가기관에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이 없을 시 해당 발행회사의 최근 선순위회사채 등급 및 평가일자로 기재됩니다.

(주3)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AAA/AA(+, 0, -) / A(+, 0, -) / BBB(+, 0, -)로 구분됩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나 그 손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투자손익은 세금 공제 전이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 시 지급하는 상환금 등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얻어지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손익과 수익자가 지급받는 상환금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중에 환매는 가능하나 환매할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에 따른 가격 하락 및 고율의 펀드 환매수수료 등으로 원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손익이 결정되며, 기초자산 관련 주식시장 붕괴 등으로 인한 주가 폭락 시 원금손실이 발생(최대 -100%)합니다.
유동성 위험 및 중도환매 위험	파생결합증권(ELS)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작습니다. 이에 파생결합증권을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 시 환매청구일과 기준가격 적용일이 달라서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높은 환매수수료 징구(잔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환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재무상황의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며 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투자원금의 일부/전액 손실이 발생 또는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및 계약조건 변경 위험	기초자산 본질 가치의 변경(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증자·감자·주식 소각 등)등의 합리적 사유로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치의 확정이 필요한 날[최초/중간/최종기준가격 결정일 등]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초자산에 대한 최초/중간/최종기준가격 결정일과 지급일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 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합니다.
가격평가 위험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의 변동과 파생결합증권의 가격이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10% 상승하였다고 하여 파생결합증권의 가격이 그와 비례하여 10%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가격은 평가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잔존만기, 시장이자율,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FX Hedged Index 성과차이 위험	FX Hedged Index는 콴토헤지 비용(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원화 투자수익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콴토 리스크를 헤지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지수에 반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기존지수 대비 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지수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 대비 성과차이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와 환율의 변동성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기존지수와의 성과 괴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차이로 인하여, 기존지수와 투자 대비 조기상환이 지연되거나 만기시점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적수익률과의 괴리위험	FX Hedged Index는 일별로 산출되는 지수로 특정기간 동안의 주가지수와 환율의 누적수익률로 계산되는 값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신탁의 초기 설정금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미달 시 투자신탁 설정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S&P500 NDF KRW Hedged Index(블룸버그 티커 : SPXNKH Index), NIKKEI225지수(블룸버그 티커 : NKY), KOSPI200지수(블룸버그 티커 : KOSPI2)**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최대 100%까지 손실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기시 기초자산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바,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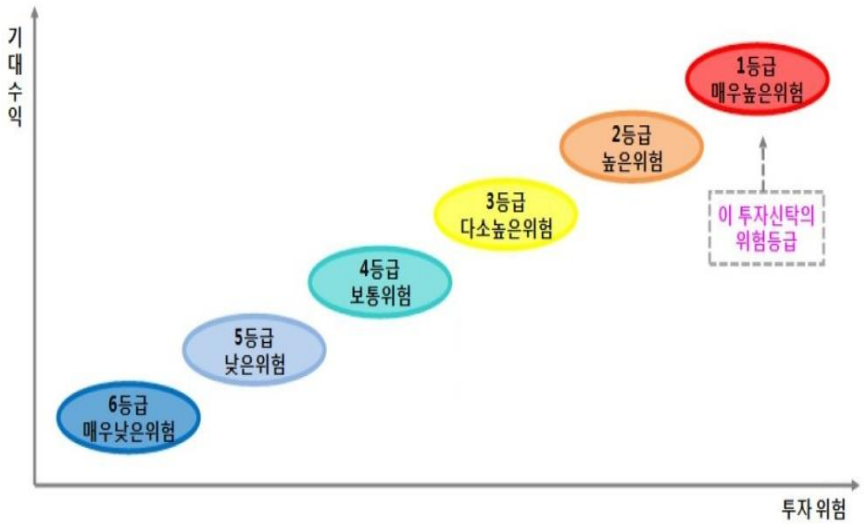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위험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주1)]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추가설정이 불가능한 단위형 투자신탁으로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6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7%	환매시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 전 환매 시	환매금액의 5%	

(주1) 이익금 :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숙려적용 대상투자자'의 경우 숙려기간에도 매입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전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 256 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판매회사·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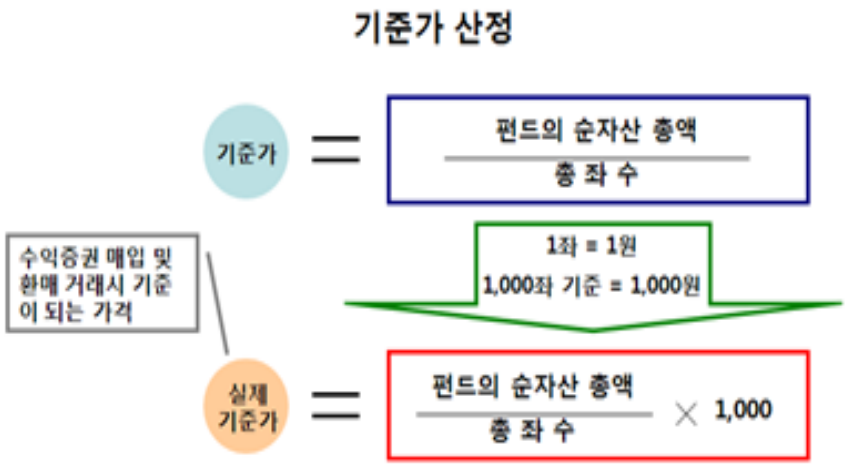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7% 이내	-	·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 6개월 이후부터 파생결합증권 상환전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 이내	-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종류(Class)별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 투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관리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및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0.198	-	0.040	0.012	**0.250**	0.001	**0.251**	0.001
		6개월 경과 후	0.001	-	0.001	0.001	**0.003**	0.001	**0.004**	0.001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까지**	0.198	-	0.040	0.012	**0.250**	0.001	**0.251**	0.001
		6개월 경과 후	0.001	-	0.001	0.001	**0.003**	0.001	**0.004**	0.001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유사한 전략의 다른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Class)		6 개월	1 년	2 년	2.5 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93	94	94	94
A-e	수수료선취-온라인	63	64	64	6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해당 예시는 펀드가 만기상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수 및 비용이 발생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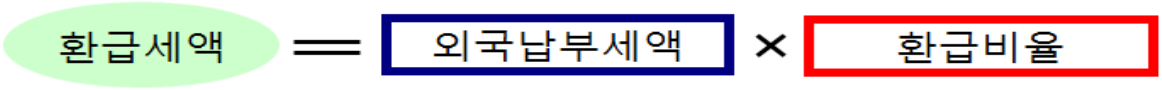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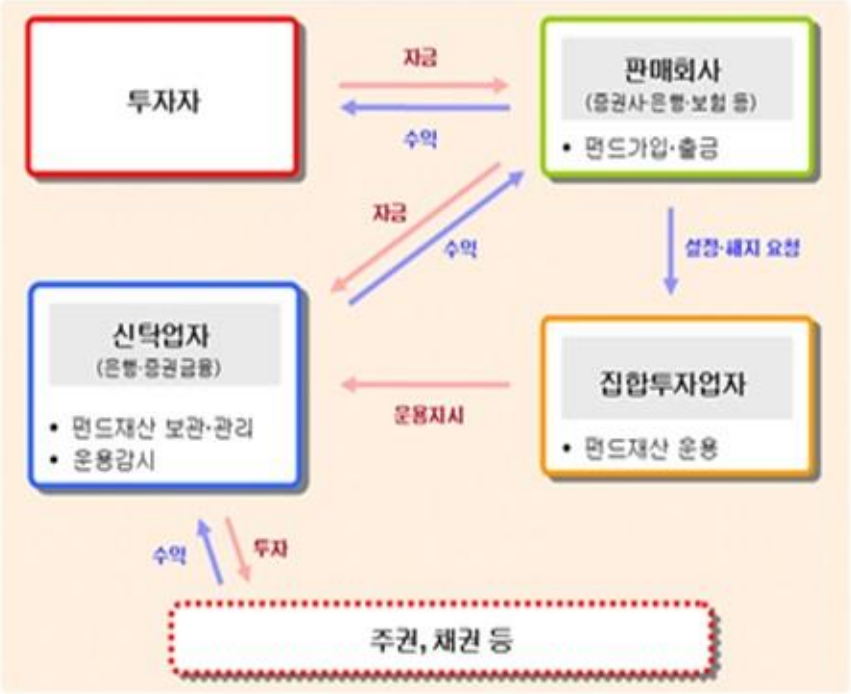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 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 억) 2018.11 자본금 증자(+30 억) 2020.08 자본금 증자(+30 억)
자본금	260.5 억
주요 주주현황	BNK 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8.12.31	'19.12.31	항 목	'18.01.01~ '18.12.31	'19.01.01~ '19.12.31
현금및예치금	3,938	5,613	영업수익	7,396	11,401
유가증권	63,815	64,259			
대출채권	39	130			
유형자산	610	1,186	영업비용	7,115	8,968
기타자산	3,204	5,197			
자산총계	**71,606**	**76,386**	영업이익	281	2,433
예수부채	64	0			
기타부채	615	3,160	영업외수익	70	957
부채총계	**679**	**3,160**			
자본금	23,050	23,050	영업외비용	204	173
자본잉여금	47,796	47,796			
이익잉여금	80	2,379			
자본조정	0	0	경상이익	147	3,218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법인세 등	72	919
			당기순이익	75	2,299
자본총계	**70,926**	**73,226**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3,707	19,705	499	-	132	1,433	4,198	-	368	26,825	56,86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02)1588-9999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kbstar.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 36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⑩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 225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법 제87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0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04월 0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 선정시 고려사항 ①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②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③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④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①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②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③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⑤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